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연말정산 미리보기: 11월에 홈택스로 예상 환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연말정산 미리보기: 11월에 홈택스로 예상 환급액 보고 12월 안에 할 일 정하기

루리
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그해 1~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. 예년에는 11월 초에 열렸어요. 12월 31일 전에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카드 사용, 연금저축·IRP 납입처럼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데 쓰세요.
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가 그해 1~9월 카드 사용액 등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. 예년에는 11월 초에 열렸어요. 12월 31일 전에 결과를 보고 남은 석 달 카드 사용, 연금저축·IRP 납입처럼 아직 바꿀 수 있는 것을 정하는 데 쓰세요.

> 2026-11-02 기준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2025년 귀속 서비스 개통 보도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세무 상담이 아니며, 2026년 귀속 서비스의 개통일과 화면 구성은 홈택스 공지로 **공식 확인**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 기본 정보

항목	내용
제공	국세청 홈택스(PC), 손택스(모바일 앱)
불러오는 자료	그해 1~9월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국세청이 가진 자료,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
직접 입력	10~12월 예상 사용액, 부양가족 변동, 연금계좌 추가 납입 같은 계획
개통 시기	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초에 열렸다고 보도됐어요. 2026년 귀속 개통일은 **공식 확인**
결과	공제 항목별 예상 세액과 환급·추가 납부 예상액
효력	예상치예요. 실제 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져요

2 2. 들어가는 순서

1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해요.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써요.

2 「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」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요. 메뉴 이름과 위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화면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3 불러온 1~9월 자료와 전년도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해요.

4 10~12월 예상 카드 사용액과 추가할 공제 계획을 입력해요.

5 예상 세액과 「절세 팁」 화면을 보고, 남은 기간에 바꿀 항목을 정해요.

3 3. 결과를 보고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것

- **카드 사용 배분**: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. 미리보기에서 25% 문턱을 이미 넘었는지 보고,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쪽으로 돌리는 식으로 계획해요. 세부 공제율과 한도는 줍줍의 「연말정산 준비」 가이드 (https://sungprofile.cloud/money/guide/year-end-prep/ (https://sungprofile.cloud/money/guide/year-end-prep/))에 정리했어요.
- **연금저축·IRP 추가 납입**: 세액공제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하고, 연내 납입 여부를 정해요. 납입 금액은 본인 현금 흐름에 맞춰 판단하세요.
- **부양가족 점검**: 올해 소득이 생긴 가족이나 새로 태어난 자녀처럼 작년과 달라진 것을 반영해요.
- **기부금·월세**: 연내 기부 계획이나 월세 세액공제 요건(전입신고, 계약서)을 미리 맞춰요.

4 4. 자주 하는 실수

- 미리보기 금액을 실제 환급액으로 믿고 돈 계획을 세워요. 10~12월 자료와 회사 정산 결과로 바뀌어요.
- 10~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지 않아 카드 공제가 작게 나온다고 오해해요.
- 1~9월 자료에 없는 공제(일부 의료비, 안경 구입비, 교복비 등)를 빠뜨렸다고 생각해요.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은 1월 정산 때 회사에 따로 내면 돼요. 항목별 제출 방법은 **공식 확인**하세요.
- 맞벌이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서로 공제하려고 계획해요.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5 5. 가상 예시

D씨(가상)는 11월에 미리보기를 열어 1~9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%를 넘은 것을 확인했어요. 10~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보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비중을 늘릴 때 예상 세액이 조금 줄었어요.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남은 것도 보고, 12월 납입 금액을 가계부에 맞춰 정했어요. 금액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.

6 6. 알아 두면 좋은 점

- 미리보기는 계획 도구예요. 실제 공제 자료는 다음 해 1월 중순에 열리는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에서 내려받아요.
- 회사를 옮겼거나 올해 퇴사했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요. 줍줍의 「중도 퇴사자 연말정산」 글을 함께 보세요.
- 공제 요건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아요. 부양가족 나이·소득 요건은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7 체크리스트

- 홈택스에서 미리보기를 열었다
- 1~9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확인했다
- 10~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했다
- 연금계좌·기부금·월세 공제 계획을 정했다
- 미리보기 금액을 예상치로만 기록했다

8 용어 정리

- **연말정산 미리보기**: 1~9월 자료로 그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홈택스 서비스예요.
- **간소화 서비스**: 다음 해 1월에 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는 홈택스 서비스예요.
- **총급여**: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. 카드 공제 25% 문턱의 기준이에요.
- **세액공제**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공제예요.

9 자주 묻는 질문

Q. 미리보기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

A. 없어요. 선택 서비스예요. 다만 12월 전에 바꿀 수 있는 항목을 놓칠 수 있어요.

Q. 미리보기 결과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?

A. 아니요. 회사 정산은 다음 해 1월 간소화 자료로 해요.

10 출처
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 (https://www.hometax.go.kr)
- 국세청: https://www.nts.go.kr (https://www.nts.go.kr)

📤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🔗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🎯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1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